2020년도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 2020. 4. 1.(수요일), 10:30
-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7건(안건번호 제2020-7374호~740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7374호~7376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20-7377호, 7378호는 2019. 12. 20., 2020. 2. 3.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5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452건 (안건번호 제2020-860호~1311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12개 안건

은 가결하고, 나머지 340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30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5개 안건(25 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44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사이트명, 7쪽의 게시물 제목, 민원 신고 내용, 8쪽의 댓글 내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1쪽~17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민원 신고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제2호 안건 회의록은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D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사이트명, 게시물 제목, 민원 신고 내용, 댓글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1쪽~17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C, A, D 위원 : 제척 사유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7374호~7407호 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87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74 호~737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 ●●●●●, ●●●●●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민원 신고 내용을 보여주면서)민원인은 URL을 특정하여 상세히 신고하였음.

(안건번호 제2020-7374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해당 영상물의 조회수는 114,299회임.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블로그에서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무단 전송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7374호~737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영상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전송하고 있는 사안임.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374호~737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20-7377호, 7378호는 2019. 12. 20., 2020. 2. 3. 민원 건에 대

한 후속조치로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737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위원회가 약두 달가량 지속적으로 해당 블로그 내 불법복제물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음. 보호원은 민원 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블로그에 대해서는 신고 건에 한정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블로그는 상당한 분량의 불법복제물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 특이한 경우에 해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7377호, 737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안으로 시정권고함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 같은 의견임.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전송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377호, 737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 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79호~7407호는 웹

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작은 아씨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91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6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31.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11.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영화는 최근 불법복제물로 자주 보이고 있음. (영화 '정직한 후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95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6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31.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브라질 영화의 리메이크작임. 해당 영화는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영화 '정직한 후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396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안건번호 제2020-7395호와 다른 모바일 웹하드에서 15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31.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화는 2020. 3. 2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화는 2020. 3. 2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은 화질이 좋아 보임.

(방송 '본 대로 말하라'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404 호는 웹하드에서 '본 대로 말하라 13화'를 6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OCN 채널에서 2020. 2. 1.부터 2020. 3. 22.까지 방영한 총 16부작 드라마임. 해당 방송물은 재방송을 자주 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7379호~740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 모두 데드카피 사안이므로 시정권고해야 함.
- C 위원 : 모두 시정권고의 타당성이 있음. 다만 이 중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하는 것이 합당함.
- A 위원 :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379호~7407호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374호~740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 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 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9쪽부터 2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 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60호~1311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12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나머지 340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30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5개 안건(25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